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

발의년월일 : 1994. 7. 12.
발의자 : 최진동 의원 130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 선임)개정 (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조례제명중 「실비 변상」을 「실비 보상」으로 한다.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함(제2조)
-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 선정된 의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자로 한다」를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로 개정함(제3조 2항)
- 제1조, 제7조 중 “실비 변상”을 “실비 보상”으로 개정함.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중 “실비 변상”을 “실비 보상”으로 한다.

제 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남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인이내로 한다”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조(선임방법) 제2항 “검사위원 등 책임자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 선정된 의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를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한다”

제1조, 제7조 중 “실비 변상”을 각각 “실비 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	제1조(목적) ----- 실비 보상에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남구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u>3인 이내로 한다.</u>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남구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u>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부산 직할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u>
제3조(선임 방법) ① 생략 ② 검사위원 등 책임자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 선정된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선임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한다
제7조(실비 변상)	제7조(실비 보상)